

<붙임>

「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」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				비 고
<u><신 설></u>				<u>부 칙 (2024. 6. 25.)</u>				- 부칙신설
				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				
<별표1> 지원대상업체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				<별표1> 지원대상업체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				
지원대상코드	지원대상	지원부문	선정기준 ¹⁾²⁾	지원대상코드	지원대상	지원부문	선정기준 ¹⁾²⁾	- 위기징후지역 소재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반영 - 특별지원부문 대상업종에서 조선업, 해운업 제외
A15	기타 지원기업 ⁴⁾	일반	<u><신 설></u> - 기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이 특별히 인정한 업체	A15	기타 지원기업 ⁴⁾	일반	-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정한 위기징후지역 소재 업체 중 광주·전남테크노파크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- 기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이 특별히 인정한 업체	
A16	경기부진 및 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	특별	-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자체 선정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o 조선업(311), 해운업(501~502) o 음식·숙박업(55~56). 단, 주점업(5621)은 제외 o 도소매업(45~47), 여행업(752), 운수업(49, 51~52) 단, 52915 주차장 운영업은 제외 o 여가업(90~91). 단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(9112),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9124), 무도장 운영업(91291)은 제외	A16	경기부진 및 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	특별	-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자체 선정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<u><삭 제></u> o 음식·숙박업(55~56). 단, 주점업(5621)은 제외 o 도소매업(45~47), 여행업(752), 운수업(49, 51~52) 단, 52915 주차장 운영업은 제외 o 여가업(90~91). 단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(9112),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9124), 무도장 운영업(91291)은 제외	
<별표2>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¹⁾				<별표2>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¹⁾				
업종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			업종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			- 주점업 범위를 명확화
주점업	5621 주점업			주점업	5621 주점업(사업자등록증 상 주점업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점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 상호명에 '포차'·'대포'·'호프'·'바'·'맥주'·'비어'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주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)			